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정 투자 규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23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재정 투자 규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등	3

I. 개요

1.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형두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재정 투자 규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제3항제2호).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여(안 제20조제2항제12호),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생략)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2.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 조정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u>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의 규모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6조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음.

- 최근 5개년(2020~2024)의 통계를 보면, 매년 협의 요청 건수는 평균 1,333건이고, 협의 완료 건수는 평균 918건, 재정투자 규모는 평균 9,62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²⁾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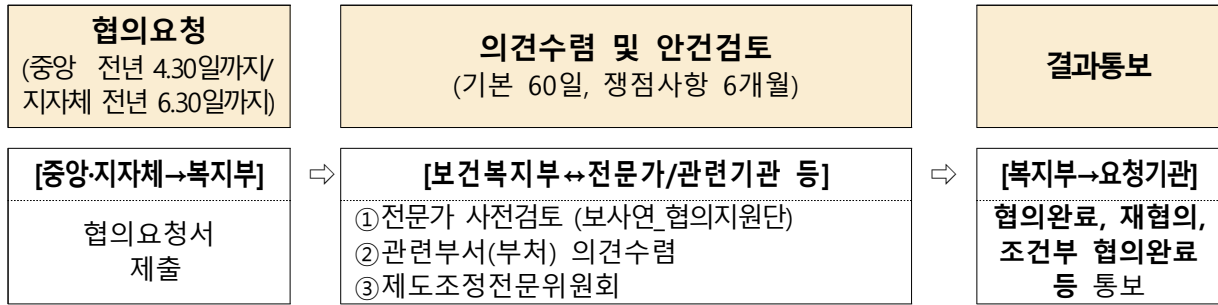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략)

< 사전협의 진행 절차 >



※ 협의 미성립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협의 건수 및 재정 투자 규모 >

(24년 6월말 기준/단위:건,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협의 요청	1,088	1,171	939	1,728	1,160
협의 완료	885	1,015	810	1,347	266
예산액	10,198	14,562	9,184	10,458	1,856

자료: 보건복지부

-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2) 단, 협의 요청 건수는 2024년은 8월 기준 1,160건으로 가중치를 두어 1,740건으로 계산하였고, 협의 완료 건수 및 재정투자 규모는 2024년 6월 기준 각각 266건, 1,856억원으로 가중치를 두어 각각 532건, 3,712억원으로 계산하였음.

□ 둘째,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3)에 따른 협의체, 즉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이루어지는 사전협의체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위원회 구성 30인 이내 중에서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행법 상 위원회 구성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여건을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인을 포함하여 지역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특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금액을 축소해 사업을 설계하는 편법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행 협의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보다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